

16. 의무유급 / 제적 / 재입학

* 의무유급

의무유급제도는 학업부진자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학사경고 횟수에 따라 유급하도록 하여 학생에게 학업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의무유급제도

- 대상자: 연속3회 또는 통산4회 학사경고자
- 의무유급 대상자는 의무유급하여 직전학기 포함 최대 연속 2개 학기 성적이 무효가능(학사경고 기록 포함)합니다.
- 의무유급시 ①학생동의서, ②학업증진서약서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의무유급 2회 이후 재차 연속3회, 통산4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학사경고제적처리 됩니다.

* 제적

제적은 자퇴, 학사경고(의무유급 2회후 재차 연속3회, 통산4회 받은 경우),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,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서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재입학 여석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유지에 유의해야 합니다.

• 학사과정생의 학사경고 제적

- 의무유급 2회 이후, 학사경고 횟수가 입학시점부터 시작하여 연속 3회 또는 2000학년도 1학기부터 시작하여 통산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사경고제적 합니다.
- 2001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입학생으로서 최초등록학기부터 2개 학기 연속으로 학업성적이 각각 평점평균 1.00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 제적합니다.
- 재학 중 받았던 학사경고는 유급, 제적,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

대로 유지되며 재입학, 복학시에도 계속해서 적용되어 학사경고의 연속 또는 누적 횟수에 적용됩니다. 다만,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한 경우에는 재입학 이후부터 기산합니다.

- 학사경고제적자가 재입학후 재차 학사경고를 연속3회, 통산4회를 받은 경우 영구제적됩니다.

● 자퇴제적

-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제적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생의 소속대학 행정실에 자퇴원서를 제출해야 하며, 본인 및 보호자 날인하여야 합니다.

● 휴학기간 만료 제적

-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.

- 군입대휴학 한 학생이 제대일이 포함된 당해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·복학 기간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됩니다.

● 미등록제적

- 재학생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.

★ 재입학

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 재입학 신청은 매학기 개강일 이전에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소속대학 행정실에 문의해야 합니다.

● 재입학 신청

- 재입학 신청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.

→ 2016년 3월 22일 제적되었을 경우, 1년이 경과한 2017년 3월 22일 이후에 신청 가능하므로, 2017년 2학기 재입학신청기간인 2017. 7. 24 (월)~7. 28(금) 중 재입학 신청 가능함

- 단, 입대휴학만기 제적자는 제적후 다음 학기부터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.
 - 재입학 가능여부는 정원내외별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입학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입학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재입학자 수업연한 재부여
 - 재입학 허가된 학생에게는 제적전의 등록된 횟수 및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년 및 학기를 조정하여 수업연한을 새로이 부과합니다.
 -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의 재입학 제한
 - 학사경고제적자 및 징계제적자가 2000년 3월 1일 이후 재입학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제적되면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.

